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(안 제43조)

가. 개정 이유

-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(9.14일 공포)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 개정

나. 개정 내용

-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기조합의 법령 위반시 과태료 상한액 조정 (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3조 [별표2] 개정)

* 주무관청의 검사거부, 임원의 겸직금지 위반 등 10~50만원 → 100~500만원으로 조정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<u>별표 2</u> 와 같다.	제4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----- ----- - <u>별표 2</u> -----

< [별표2]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>

위 반 행 위	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	현행	개정안
1.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·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	가. 법에 따라 조합, 사업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	법 제141조 제2항제1호	<u>30만원</u>	<u>300만원</u>
	나.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(법 제79조 또는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때	법 제141조 제2항제2호	<u>30만원</u>	<u>300만원</u>
	다. 법 제43조제3항(법 제85조,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때	법 제141조 제2항제3호	<u>10만원</u>	<u>100만원</u>
	라. 법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(법 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때	법 제141조 제2항제4호	<u>30만원</u>	<u>300만원</u>

마. 법 제63조 또는 제64조(법 제85조,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	법 제141조 제2항 제5호	<u>30만원</u>	<u>300만원</u>
바. 법 제65조제2항(법 제85조,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	법 제141조 제2항 제6호	<u>30만원</u>	<u>300만원</u>
사. 법 제68조제2항(법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공고를 한 때	법 제141조 제2항 제7호	<u>30만원</u>	<u>300만원</u>
아. 법 제70조 또는 제71조(법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때	법 제141조 제2항 제8호	<u>20만원</u>	<u>200만원</u>
자. 법 제72조(법 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	법 제141조 제2항 제9호	<u>30만원</u>	<u>300만원</u>
차. 법 제73조제2항(법 제87조, 제98조 또는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때	법 제141조 제2항 제10호	<u>10만원</u>	<u>100만원</u>
카. 법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0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	법 제141조 제2항 제11호	<u>30만원</u>	<u>300만원</u>
타. 법 제129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	법 제141조 제2항 제12호	<u>30만원</u>	<u>300만원</u>
파.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	법 제141조 제2항 제13호	<u>30만원</u>	<u>300만원</u>
2. 법 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	법 제141조 제1항	<u>50만원</u>	<u>500만원</u>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조합 등의 법령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으로 주무관청의 관리·감독 권한의 실효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.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(안 제13조)

가. 개정 이유

-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을 통해 폭넓은 인력 활용 가능성 제고 및 조합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유도

나. 개정 내용

- 공무원 경력자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제4차 산업시대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활용 등 촉진

* 농·수협 상임이사 자격기준 등 타법 수준과 유사하게 조정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상근이사의 자격기준)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”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	제13조(상근이사의 자격기준) 법 제50조제6항과 법 제9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”란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	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2. 중앙회의 과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지방조합, 사업조합, 전국조합 및 연합회의 부장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	2.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	3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

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5.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이거나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6.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,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, 「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중앙회 회장이 인정하는 자	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. 임명하고자 하는 조합의 업종과 관련된 연구·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
---	--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상근이사 자격 기준 개선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폭넓은 인력 활용 가능성 제고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3.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(안 제21조제2항제1호)

가. 개정 이유

-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자격을 3개월 이상 납입자로 한정함으로써 긴급한 경영안정자금에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기 대출 곤란

나. 개정 내용

- 중소기업공제부금 대출자격을 3개월→1개월로 완화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중소기업공제금등의 대출 등) ②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하지 아니한다. 1.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	제21조(중소기업공제금등의 대출 등) ② (현행과 같음) 1.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
2. 이미 대출받은 중소기업공제금의 상환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	2. (현행과 같음)
3. 채권등의 회수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는 경우	3. (현행과 같음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중소기업 공제부금 대출자격 완화를 통해 공제기금 가입 촉진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확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4.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 (안 제41조의2)

가. 개정 이유

- 부실운영 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 유도를 통한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 도모

나. 개정 내용

- 휴면조합 지정요건에 ‘이사장 1년 이상 공석’ 및 ‘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’ 규정 추가
- * 다만, 자본잠식의 경우 설립인가일부터 3년 미경과 조합에 대해서는 미적용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의2(휴면조합의 지정요건) ① 법 제13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41조의2(휴면조합의 지정요건) ① 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<u>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</u>
<신설>	5. <u>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. 다만,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부실운영 협동조합의 조기 퇴출로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